

#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업무 개요

(기준일 : 2020.07.10.)

※ 법률 제17412호, 2020. 6. 9., 제정 / 시행 예정일 : 2021. 6. 10.

## I 제정배경

- 점(點)단위 문화재 보존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면(面)단위 ‘역사문화권’ 개념을 도입, 문화재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·거시적으로 보존·관리할 필요성 증대
- 고구려 등 역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조사·연구 및 발굴·정비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

## II 추진방향

- 그간 고대역사문화권법, 백제왕도·신라왕경 특별법, 가야법 등 지역별 시대별 개별법이 발의되어, 그 주요내용을 통합·반영한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추진
- 역사문화권의 실체적 연구·조사뿐만 아니라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아 개발과 보존의 균형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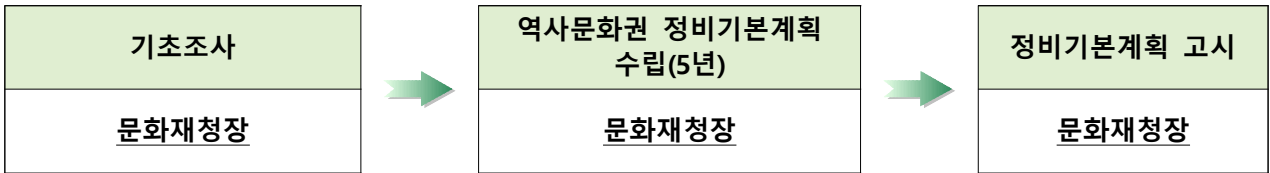
## III 주요내용 (6장 35개 조문)

- 고구려·백제·신라·가야·마한·탐라 역사문화권 지정
-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실시
-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, 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시책
- 체계적 조사·연구를 위한 ‘역사문화권 연구재단’ 설립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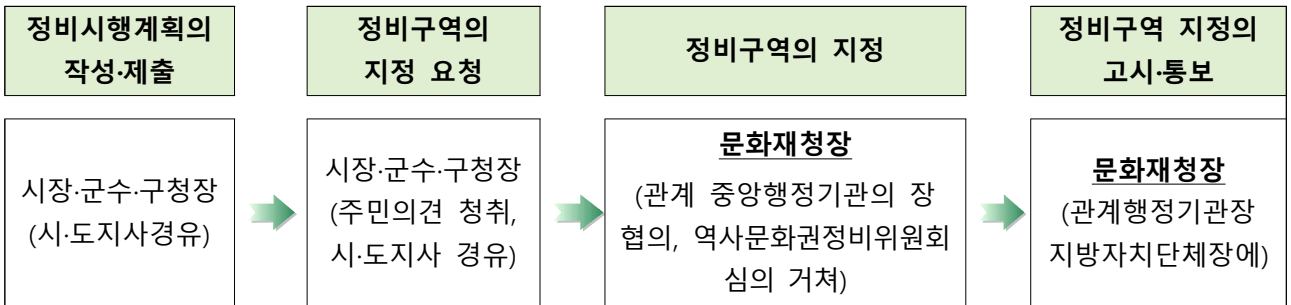
### < 고대역사문화권법 및 가야법 등 관련법률(8건) 발의 현황 >

- ◆ **가야법 및 고대역사문화권법안**
  - \* 가야법( ‘17.08.25./ 민홍철의원), 고대역사문화권법(’ 17.12.15./ 운영일의원)
  - \* 고대역사문화권법( ‘18.03.13./ 정중섭의원 문체위)
  - \* 탐라역사문화권법( ‘18.11.1./ 위성곤의원, 산통위)
  - \* 마한역사문화권법( ‘19.6.27./ 서삼석의원, 농림위)
- ◆ **백제왕도·신라왕경 특별법안**
  - \* 신라왕경법( ‘17.05.29./ 김석기의원, ’ 19.12.10 제정), 백제왕도법(’ 17.05.30./ 정진석의원, 문체위)
- ◆ **풍납토성법** \* 풍납토성법( ‘17.02.28./ 박인숙의원), ’ 20.5.7 법사위회부, ‘19.5.20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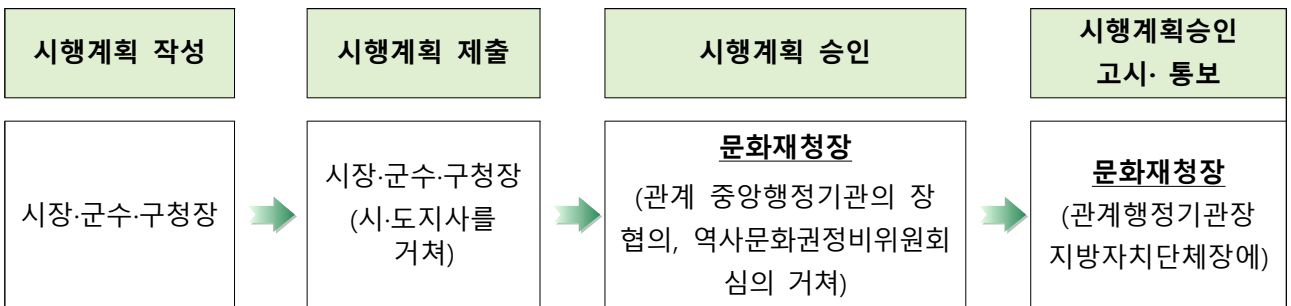
<정비기본계획 수립>



<정비구역 지정>



<정비시행계획 시행>



<실시계획 승인>

